

● 1988년 8월 1일 발행
 ● 발행인 / 이효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주) (주) - (주) (주)
 서울 서대문구 중정로
 3가 30-8
 ☎ 313-1060
 ● 값 / 500원

함께 가는 여성

1988

8

통권 제12호



(인천 금속모조전자) 사진 - 한상균

남자일과 여자일의 분리는 여성의 차별임금을 부추긴다. 같은 사업장에 남자가 동시에 비숙련노동자로 취직했다 해도 남자는 곧 숙련기술자로 키워주지만 여자는 기술을 익힐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년후에는 남자는 숙련공으로 한단계 진전하지만 여자는 단순직으로 입사때와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임금차이는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문 '차별임금' 중에서)

목차

- | | | | |
|-----------|--|-------|--|
| 2 | 이렇게 생각한다 / 물 건너 있다 망상당한 '무노동 무임금' | 14·15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 공개토론회 "우리 일터에서 폭력을 추방하라" |
| | 여성만땅 / 가까이 가까이 좀더 가까이 | 16·17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Ⅱ /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
| 3 | 생활속의 실천 / 먼저 임부터 자립하자 | | 독자독후감 / 복권을 새로 보는 책 |
| 4·5·6·7·8 | 북한 바보알기 / 1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북한 | 18 | 여성민우회상담실 / '일사각'이란 최 패란에 |
| | 2 이영희씨 강의 "7·7선언은 핵심을 찌른다" | 19 | 이달의 소식 / 어떤 하루르트유럽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가두홍보·문구등 지역 5년 선고·어떤 '무전경쟁서 성고문자란 판결에 대한 우리 의 견해' 발표·민주회 제2회 여성조립회교실·공동올림픽경기와 평화 협정체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
| 9 | 발언 / 권민숙 | 20 | 계시관 / 김경숙씨 9주기 추모기념 및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
| 10·11·12 | 여성노동의 현장 / 차별임금Ⅰ '생산직' | | |
| 13 | 세계의 여성 / 인도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이 한 조직으로' 낱말맞추기 | | |

이정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물건너 왔다 망신당한 '무노동 무임금'

최영희 (민주회 부회장)

오랫동안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이 생산직·사무직·서비스·전문직을 불문하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의존적 삶을 탈피하고 자주적 삶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결성, 새로운 민주적 노동조합으로의 개편, 그리고 쟁의를 불사하는 단체행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속한 사업장, 또는 내 남편이 속한 사업장에서 내게 직접 이득이 되는 문제를 갖고 단체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단체행동(쟁의)을 사회불안요인으로만 생각게 된다.

일례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의사들, 심지어 수련의들조차도 '병원에 무슨 노동조합이나, 간호원들이 웃긴다'고 비양기랄 뿐이었다. 특히 이들이 임금인상과 종업원 복지, 병원내의 비리나 문제점을 제기하며 파업농성을 벌였을 때 병원이 곧 망하고 세상이 뒤집어질듯이 노동조합원들을 비난

했었다. 그러나 5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일률인상되고 가족(처가쪽까지)의 진료 및 입원비에 50%의 혜택을 주는 등 편리한 점이 많아지자 그때서야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 안준다.!

근로조건면에서만 보면 생산직 사무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느끼는 문제점은 마찬가지다.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신문사의 언론자유를 위한 편집권, 사무직의 해고·낙하산 인사 등의 인사제도, 연구소의 어용성 탈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가 건의에 의해서, 혹은 사업주의 양심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받기 쉬운 사회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의 문제는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도 불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을 묵묵히 참아온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보고자 쟁의를 시작하니 이 쟁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또다시 정부가 앞장을 섰던 것이다.

바로 '무노동 무임금' 지침이다.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을 안준다는 논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다. 이것은 서구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퍼오던 논리로 정부가 날매게 그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서구사회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같은가?

그러나 첫째,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구사회의 노동조합은 조합비에서 쟁의기금을

확보하여 쟁의기간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파업이나 노동쟁의는 어떤 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전쟁이므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전시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물자가 쟁의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적으나 쟁의기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1980년 5·17이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조합비의 5~50%를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명문화하여 노동조합원이 자기가 낸 조합비로 자신의 복지기금을 쓰도록 한 것이다. 결국 쟁의기금은 엄두도 못내게 만들어버렸다.

둘째, 서구의 사회는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 목을 매고 있지 않다. 우리는 최저생계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쟁의를 벌이는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서구사회는 사치품은 고가이지만 기초생활용품은 최저의 가격으로 보장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있고, 교육제도도 우리보다는 의무교육연한이 길어 교육비부담이 적다.

네째, 우리나라 노동자의 파업은 서구의 형태와 다르다. 우선 서구는 현장을 떠나버리는 파업이고 우리나라는 파업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는 파업이다.

반면에 우리사회는 어떤가. 서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에, 최저생계비유지비용이 임금인상의 최고 목표인 게 현실이고, 사회보장제도도 극히 미미하다. 얼마전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전체 수입의 30% 정도를 주택비로 부담하고있다. 쟁의기간이라고 공중에 떠서 생활할 수 없고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만약 쟁의기금이 확보된다해도 현재의 임금구조로서는 너무도 적은 금액이므로 쟁의중의 생계보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파업하는 상황이 아니다. 살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을 장기화시켰고 재파업 돌입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은 정부당국도 지난 18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즉 한국사회를 인식하지 못한 지침이었다고 하며 '무노동 무임금' 지침을 철회하게 되었다. 이제 마찬가지로 서구이론을 무조건 도입하곤 하는 우리 고매한 '이론가'들도 학문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여성만평



가까이 가까이 좀더 가까이

그림·박경미

먼저 엄마부터 자립하자



“△△야, 시간됐다. 교육방송 빨리 틀어. 필기도구 준비하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국민학생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는 또하나 일거리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방송을 들어야 방학숙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게 한 탓인데, 아이숙제가 아예 엄마숙제가 돼버린 집이 한둘이 아니다. 엄마숙제는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다. 그림, 글짓기, 공작숙제, 심지어는 일기까지, 개학 며칠을 앞두고 밀린 방학과제물을 대신 처리해주느라 끔찍했던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제 할 일을 엄마에게 미루는 아이, 또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엄마, 그 찰질못을 따질 만한 사례는 흔하다.

“아무리 전날밤에 과제물을 챙겨놓고 자라도 해도 꼭 엄마손으로 가방을 싸줘야 가져가요”

“이상하게 제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과 놀면서도 항상 ‘아기’ 역만 맡으려고 해요”

“책상에 앉혀놓아도 엄마가 옆에서 일일이 지도를 해야지 그럴잖으면 몇줄도 안쓰는 버릇이 들었어요”

엄마들의 이런 걱정은 결코 무심코 흘려버릴 내용이 아니다. 이른바 ‘자기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는 아이, 항상 남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대접만 받으려 하는 아이들... 이렇게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의 태도는 바로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잉통제의 교육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

자식을 온실 화초처럼 생각하는 부모

‘돌만 낳아 잘기르자’ ‘하나 낳아 젊게 살자’ 가족계획 구호대로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둘로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교육현상이 바로 부모의 과잉보호, 예전의 외아들이나 막내 기질이 요즘 와서는 많은 아이들의 일반적 기질이 되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고싶은 걸 못하면 기가 죽어 성격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가사만 전담하는 어머니가 많은 중산층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어른뻘치게 호화롭게 차려주는 아이들의 생일잔치, 툭툭한 두다리 두고 학교 문앞까지 모셔드리는 자가용등교, 나가 놀면 혹 무슨일이 생기세라 집안에만 가둬놓기, 부모 입맛대로 피아노·운동·속셈·미술·무용 등 취미활동 키워주기, 유행가를 불러도, 천박한 은어를 흉내내도, 욕을 해도 그저 흥흥흥 귀여워하기...

마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애완물인양 품에 안고 쓰다듬는 부모의 보호는 아이들을 망칠 뿐이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소유물이나 애완물 수준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 가정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형편이라 시간적으로도 자녀의 요구에는 모두 응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되어 가정형편상 무리를 하면서도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럴 경우는 대부분 ‘하나뿐인 아들’일 때이다.

명령과 복종, 체벌의 과잉통제 교육

아이들의 자립심 발달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과잉통제를 들 수 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행동이 늘 불안하고 못마땅해 넘쳐와 간섭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가 죽고 자기 주장을 망설이며 복종적인 성격이 돼버린다.

과잉통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추상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아이들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모자식간이 명령-복종관계로 맺어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또 어른 입장에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그것을 못할 경우 못한다는 비난을 어른의 스트레스 해소경로로 보는 수도 많다. 공부할 여전과 분위기 조성없이 ‘공부하라’고만 옥박치르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부모부터 자립하자

아이들은 자라 언젠가는 자립적 인간으로 서야 한다. 자립심은 물론 어려서부터 키워야 하므로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① 먼저 엄마가 스스로 아이에게서 자립하자.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도 잘 지내는데 엄마가 아이없이 못지낸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착각속에 서로를 묶지 말고 진짜 ‘자식 귀한 재미’를 맛보도록 해야한다.

② 엄마의 존재가치를 자녀키우기에만 두지 말자. 이런 엄마는 자신의 모든것인 자식이 품안을 떠나는 허전함이 두려워 무의식중에 자녀가 자립하는 것을 가로막는 과잉보호형이 되기 쉽다.

③ ‘하나뿐인(또는 둘뿐인) 내 자식’이란 소유개념에서 벗어나자.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간섭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녀는 소유도 애완용도 아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혼자 견도록 지켜보는 게 최상의 태도.

④ 이웃과 공동의 삶을 갖는 기회를 넓힌다. 한 자녀에게서 많이 보이는 ‘나만 최고’라는 우월감은 우물안 개구리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되도록이면 이웃과 어울려서 놀게 하고 부모들끼리도 대화나 놀이 등의 자리를 함께 한다.

⑤ 모든일을 아이 스스로 하게 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거나 반대로 어려운 문제라도 일단 아이에게 먼저 해보도록 기회를 준다. 가방챙기기, 숙제하기, 집안일 거들기 등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 ■

북한 바로알기

북한을 바로 알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너무나도 늦게 시작된 이 운동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함께 가는 여정'에서도 '북한 바로알기'라는 연재기획안을 마련했다. 그 첫번째로 이번호에는 1 북한 사진모음과 2 이영희씨의 '민주화원의 날' 강의 내용을 실기로 한다. 북한사진모음에 실린 사진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9일까지 천주교경주대교구 경주지역 청년연합회 주최로 열렸던 북한사진전에서 선보였던 것들이다. 모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부발간 자료도 있다. 입수된 사진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시중 출판된 책들에서 뽑은 내용들로 설명을 붙였다. 너무 제한된 사진, 내용들이라 이것으로서 북한을 과연 제대로 알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보다 깊고 정확한 기사를 다음호에 약속한다. 편집자주

1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오늘

북한사진 모음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평양의 한 산부인과수술실

◀북한에서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료이고 군 통치하에 국민보건은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 식물관리, 관리, 체계적 방역사업과 위생관리, 청결단과 조기출산율 증진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산모는 77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은 하루 6시간만 일하고 8시간의 수당을 받는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2~3명의 자녀를 낳으며 가족계획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60형준 90원'이라는 구호는 재밌고 이상적인 북한의 국민보건정책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소년궁전에서 손풍금을 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는 사상학습 이외에 1인 1악기 1기술 1체육 등이 강조된다. 개인이 지닌 소질을 충분히 개발하여 발휘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소년궁전은 5만평미터의 건물을 가진 큰 방음으로 여기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누어 2백여명의 과목을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재능과 흥미에 따라 과외로 배운다. 이 과정에서 재능이 있는 어린이는 선발되어 필요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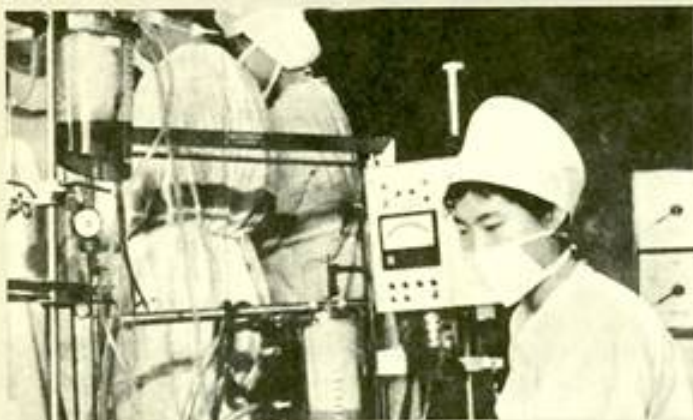
보통강이 시 가운데로 흐르는 평양의 모습

▲평양은 인구가 백만인 현대적인 대도시이다. 놀라운 것은 신호등이 하나도 없지만 무리없이 차들이 줄지어 달린다는 사실이다. 교통위반 차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리는 깨끗하고 건물들은 새만나기보다는 실용적이다. 대중교통의 놀라운 빠드나무와 뱃놀이 그리고 전통식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내는 공원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한 유치원 모습(맨왼쪽)과 평양에 있는 한 부인복 공장내의 탁아소 모습. 위

◀가운데 사진은 보모에 이끌려 거리를 걷는 어린이들의 모습. 북한에는 약 6만여명의 보육원이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일체가 무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물도 무상지급된다. 유치원 마지막해부터 인민(국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5년, 모두 11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시행하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 1백60여개의 대학과 5백여개의 특수교육시설이 있다. '전인적 인텔리'라는 장기정책 아래 직장인의 평생교육을 만리무화하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는 소년단 활동을 통해 철저한 사상교육을 시키며 과외활동을 통해 예능, 기술, 체육 등 실기교육도 강조한다. 한반은 30~35명으로 엄격한 자치적 규율속에서 학습한다. 고등교육에서도 개성의 창의적 발전이나 학문의 자율적 계발보다는 집단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기술교육과 학명아침 정립이 교육의 중상내용이다.





평양 시내에 있는 참관원 식당

◀북한사람들은 휴일에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거나 동물원을 구경하거나 넓은 공원을 산책한다. 일과후나 휴일에 참관원과 같은 식당을 찾아 외식을 하기도 한다. 옷이나 사상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하루일이 끝나면 비슷한 수준에서의 여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가극 '피바다'의 한 장면 위와 '북한의 주장'이라는 영화포스터 (오른쪽)

▶북한의 영화나 예술은 오락이나 흥행 위주의 상업적인 것은 별로 없으며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민중의 취미에 맞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계몽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많이 평가받고 있다.

민족주제화 '남강마을의 여성들'

▶여성들의 호국위지와 건담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북한노동력의 약 48%를 차지한다(1976년). 주된 일하는 의료계, 교원, 경공업과 농사사업이다. 최고인민회의의 5분의 1이 여성의원이며 협동농장에는 5백명의 여성이 위원장으로 있다.



무용극에 출연. 미군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소녀들

▶섬뜩하게 느껴지는 장면이다. 어린 소녀가 무엇인가를 들고 미군에게 총을 겨누는 것인데, 한국 동원해 인구가 당시 40만이던 평양은 미군 B-29가 떨어뜨린 42만개 이상의 폭탄으로 완전 파괴, 집 2채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 북한사람들은 그 위에서 경제개발 7개년계획, 6개년계획 등을 충실히 성공시켜 오늘날의 평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국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있다고 보는 북한사람들에게는 따라서 자립경제개발, 자주시장, 독립의식의 강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바로알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통일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통일해야 한다면 서로 왜 통일되지 않느냐.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어 오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며, 통일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은 제스처에 불과했다.

대학생들, 이북보다 미국을 더 싫어해

최근 들어 놀라운 사실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그 한가지를 보자. 오늘날 6·25 이후 세대는 인구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이 6·25이후세대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은 이북되어야 한다"에 71.5%, "반공해야 한다"에 26.8%가 응답, 압도적인 수가 통일을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미국의 해외여론조사연구소의 공동조사에서도 "통일이 가능하다"에 33.1%, "희의적이다"에 41.2%가 응답한 것으로 나와있다. 우리가 이제 다만 여론의 대상으로서만 통일문제를 다룰 시기는 이미 지났음을 알 수 있다.

1977년과 88년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이북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77년,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이북이 61%, 일본 29%, 중공 4%, 미국이 3%로 꼽혀 동포를 가장 싫어하는 못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88년에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일본이 54%, 북한이 15%로 10년 사이에 이북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생각한 사람은 3%에서 16%로 증가, 오늘날은 미국이 이북보다도 더 싫어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전에는 이북을 공산권의 자개반국으로만 보았으나 지금은 주체성있는 민족주의국가라고 보는 등 이북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반란집단' → '국가'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길이 요원한 데는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다. 며칠전 내무부장관과 4당의 통일전문가 대표와의 TV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부 대표인 내무부장관은 이북을 국가로 파악, 선언했으나 학식있다는 야당의 통일전문가들은 이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대변인을 몰아세우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었다.

2

이영희씨
지상강의

지난 7월 9일
민주회에서는
통일문제 전문가인
이영희씨(한양대
교수)를 모시고
3시간에 걸쳐
통일문제 강연을
들었다. 민주회
'회원의 날' 행사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 내용을
'함께 가는 여성'
독자외도 함께
나누고자 지상강의로
요약해 실는다
· 편집자주

7·7 선언은 핵심을 빠뜨렸다



이처럼 이북은 지난 45년간 '북괴', '반란집단' 등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은 아무런 기본전제도 없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노태우 선언은 그 자체는 통일지향적이 아니면서도, 굉장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아주 교묘하게 꾸며졌지만, 어쨌든 이북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데, 이에 야당이 이처럼 부당하

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통일을 가로막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이 정말 '유일합법정부'인가?

그러면 이제 휴전선 이남과 이북에 위치한 이 두 정치단위를 규정, 쌍방의 관계를 살펴보자.

1948년 이후 40여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북쪽의 정부는 아무것도 아닌 괴뢰집단이라고 규정해 왔다.

남쪽이 북쪽을 '미수복의 영역'으로 규정해온 법적 근거는 UN 총회가 반도 남쪽(38도선 이남)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의 총회결의 제195호의 III이다. 그런데 이 결의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게 확대·왜곡 해석되어 왔다. 해당부분을 보자.

UN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전 코리아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력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부가 코리아의 그와 같은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며,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또 그 정부는 코리아에서 유일한 그와 같은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즉 대한민국정부는 UN 한국감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통치력과 사법권을 가진 합법정부라는 것이다.

이 결의를 코리아반도 전역에 대한 것으로 착각(선의로)했거나 왜곡(의도적으



1953년 10월 '통일'을 외치는 여학생들이 부산 미대사관 앞에서 유엔이남 문제사건을 하고 있다.
6·25 전후 '통일통일' 주장은 이토록 대두하였다.

로한 탓에 남·북한 관계에서는 물론 대외적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물의를 빚어왔다. 그 예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국교정상화(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기초할 때, 일본 대표단은 이 유엔총회결의를 기어이 조문에 넣기를 주장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만 기술하자고 주장해서 오랫동안 회담이 교착된 일이 있다. 결국 일본측 요구대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의 III에 명시된 바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로 결말지어졌다.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이 옳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승인 및 외국 군철수에 관한 결의'라는 UN총회의 결의는 제9항에서 '유엔회원국과 기타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본 결의 제2절(항)에 명시된 제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그토록 UN 결의를 내세우지만 실상 잘 알고나면 바로 그 UN 결의에도 우리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합법정부라고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휴전협정엔 이북과 미군이 서명

최근에는 대학생들 사이에 6·25전쟁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6·25는 어떤 성격의 전쟁인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이북의 이남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정된다면, 이는 '침략'이란 주권국가 사이의 군사행동을 전제할 때 정부가 이북을 괴리집단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실제로 UN이 감시하지 못한 한반도의 남거진 공백은 대한민국 주권밖의 국가

이며 정권인 것이다. 따라서 이북에서는 이남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남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남도 이북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쌍방이 서로 군사행동을 통해 무력통일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체결시 우리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북의 그 '반란단체'가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국가'로 승격함을 목격하게 된다.

'휴전체제'란 19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시의 군사적 실세의 선을 분계선으로 하여 잠시 '전투행위'를 정지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쌍방간의 '전쟁상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존의 휴전이 전쟁상태인 까닭에 지난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진행돼온 실정이다. 따라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해야만 한반도에서는 진정한 긴장완화가 이뤄질 것이며 전쟁재발의 위험을 저지할 수 있다.

휴전협정 자체에도 앞으로 휴전협정 대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4조 60.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각국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군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덕회

이 건의에 따라서 1954년 4월, 쌍방 참전국 19개국 정치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냉전의 최고시기에 '전공산권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려했던 미국의 입장 때문에 쌍방주장이 타협을 보지 못한 채 전쟁의 휴전상태라는 파행적 질서가 한반도에 계속돼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휴전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평화조약 체결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문해 봐야할 것이다.

당시 우리의 작전지휘권은 미국과의 합법적 조약에 의해 이양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휴전협정시 당사자 자격이 없었으며, 이에 근거해 이북은 얼마전까지 계속 남한을 배제한 2차회담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즉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외국군대의 철수 등 군사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남·북한 당사자가 평화조약을 체결,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북의 종전까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남이 계속 3차회담을 요구해오자 드디어 이북은 3차회담을 수락하고 그들의 입장을 양보·후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북쪽의 주장도 휴전협정으로 인해 그 법적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 설치, 국회 동의도 안거쳐

그러면 이제 6·25이후 1953년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을 살펴봄으로써 한미관계를 진단해보기로 하자.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한미관계의 기본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민에게는 미국이 은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미조약은, 자세히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아무런 의무·책임을 안 지게끔 규정되어 있다. 이 조약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쪽을 방위하려는 목적 하나와 정전을 반대하면서 군사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의 군사적 도발행동을 방지하려는 이중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으로 미국군대는 남쪽의 영토와 영해에 주둔하는 권리를 장악한다. 그러나 북대서양동맹조약에서 외국의 가입국에 대한 군사공격이 있을 때는 조약국가들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즉각 행동을 취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영토에 대해서만 방어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남한이 북침



1953년 7월27일 유엔군 대표 해리스 소장과 북한의 남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북한 바로알기

함으로써 일어날 사태에 대해 미국이 책임지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국가라고는 하지만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영토를 미국의 핵무기 군대를 위해 전면적으로 양도해야만 한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권, 작전지휘권은 미국의 현지사령관인 일개 육군대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더 현실한 사실이 있다. 국가 사이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국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은 행정부 사이의 조약에 의거, 현지사령관의 권한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법은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현 국회가 진정한 민주적이고자 한다면 앞으로 이를 문제삼아 다뤄야 할 것이다.

왜 독일식 통일방안은 안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지 않았고, 노태우 대통령도 이번 선언에서 스스로 지정한 것처럼 선전효과만을 노려 왔다. 그렇다면 이번 7·7선언의 실질적 내용은 어떠한가.

노태우 대통령의 모든 제안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전상태를 종결할 강화 조약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교차승인을 통한 독일식 방안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독일식 방안이란 무엇인가.

독일은 지리적으로만 보아도 유럽대륙에서 서구·동구문화를 구획짓는 북송아씨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중양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게르만족의 두뇌적 우수성·전투성은 역사적으로 양차세계대전을 도발할 만큼 막강했으므로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유럽의 13개국과 소련·미국·영국·프랑스 등 어느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된 독일이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서구·동구권의 대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변국과 4대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독일의 영구분단을 원하고 있으므로 1972년 서독 수상 브란트에 의해 동·서독간의 교류를 위한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일식 방안은 통일을 가져올 것처럼 선전되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영구분단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변강대국가인 소련·중국·일본은 통일된 우리를 겁낼 이유

가 없으며,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한국이 스위스·벨기에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동아시아 정세의 평화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북이 남침한다./?

나는 이번 7·7선언의 6개항 제안은 군사행동이 빠져 있으므로 북쪽에서 선뜻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북은 국제적인 외교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북은 이 선언으로 인해 남침에 물린 격이 되어 버렸다.

7·7선언은 국내의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재의 휴전상태를 유지시키려는 것뿐이므로, 각 항목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군사문제의 해결없이 어떤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알아왔고, 항상 이북에 의한 남침의 불안 속에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간의 군사력상태를 비교해보자.

이북과 이남의 GNP상의 군사비 지출을 보면 이북은 GNP의 20%, 이남은 3%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이남의 군사적 불안정을 과대평가 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주둔을 정당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투기 등 신예무기 판매의 구실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방부, 스톡홀름의 세계전략연구소, 일본자위대 등의 객관적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쪽이 보유한 탱크 포, 전투기 등은 대개가 우리보다 1세대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세대 앞선 무기는 남은 무기와 그 위력에 있어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다. 무기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가 중요하며 양적 차이는 오늘날에 있어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양적으로 보아도 이남의 경제력의 5분의 1 규모를 가진 이북은 도저히 이남의 군사력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남은 공군력·해군력에 있어서도 이북보다 월등히 우세하다. 이북은 소형의 방어용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본수에 있어서는 우리 쪽보다 적다. 또한 우리는 세계 1, 2위의 조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에 있어서도 우리 육군은 베트남전에서 실전경험이라는 유리함을 갖고 있다. 공군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공실전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북은 비용상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하산부대의 수송 등을 위한 민간 항공기수도 우리가 월등히 많다. 물자 수

송을 위한 대형트럭 등의 보유와 생산능력도 우리가 현저히 우세하며, 전쟁시 물자수송 등을 위한 도로망도 우리에게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능력이 우세함을 정부는 알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통일의 열쇠는 지금 우리의 손에

오늘날 실제로 군사적 능력·국제정세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북·이남 모두가 전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쟁할 능력은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을 뿐, 이북은 갖고 있지 못하다.

얼마전 한겨레신문에도 발표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을 통한 첩보활동은 삼장법사의 손아귀에서 노는 손오공을 들여다 보듯, 지구 구석구석의 모든 활동을 정밀촬영을 통해 낱알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휴전선 남북간의 군사이동은 미·소에 의해 낱알이 완전하게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습공격이나 비밀공격이니 하는 따위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케케묵은 사고의 소산일 뿐이다. 이제 남·북 모두에게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6·25전쟁기간중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석기시대로 되돌아갔던 북한은 이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후 재건설 과정에서 지하에다가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지었고 지하철도 1백30미터 이하에 건설, 이를 핵방공호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이북의 전국 요새화인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이북이 강해서가 아니라 공습을 피하기 위해 그리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당사자들, 그리고 소련·중국·일본 등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오늘의 상황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의 경제이익상 세계의 어느곳에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는 '군산복합체'가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요컨대 지금은 우리 남북으로 갈린 한 민족의 태도, 그 여하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이 갖가지 가능성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때, 말로만의 통일이 아닌 진정한 통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장정의 첫걸음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 즉 평화협정의 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발언/권인숙

올 2월 아는 분들과 택시를 함께 탄 일이 있었다. 내 이름이 불러졌고 그때 운전사아저씨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권인숙씨 맞아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는 말문을 못잇고 내 얼굴을 뚫어 쳐다보기만 하셨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나 또한 그랬다.

수 없이 많은 플래시를 받으며, TV에 고개숙인 채 종종걸음을 치는 나의 모습이 빈번하게 나오는 걸 응시하면서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 힐끔 힐끔 쳐다보는 호기심 가득한 많은 눈길을 애써 대연한 채 피하면서 솔직히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고 내가 짊어진 짐이 무겁기만 했다. 어쩌면 성고문을 당한 1986년 6월 7일 그날보다도 그것을 폭로한 후 나는 더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의연히 버티기가 말이다.

그 운전사아저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일을 끝내 알아야 하고 싸워야만 하는 고봉, 그것에 배어나온 눈물, 그러나 감추지 않고 나의 힘겨움을 애써 누르고 우리 국민 모두 또한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은 밝혀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추악한 역사적 반복을 피하고 터무니 없는 희생은 막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와 모두는 이제까지 싸워온 것이다.

아직도 구시대의 껍질 못벗은 사법부

요즈음 사법부는 법관들의 서명, 정기승대법원장 임명동의 국회부결 등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 2년여 동안 힘겹게 싸워서 만들어진 문경장의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법부의 모습은 형식적 선언은 어떠했음지라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의 껍질을 벗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귀동이 사정(射精)을 했는가?”

“경찰에서 맞은 상처를 유치장 수감인에게 보여줄 때 바지는 어떻게 내렸는가?”

“음부에 성기를 대었을 때 음부에서 액이 나왔었는가?”

애초부터 나의 고소의 진실성 여부만을 묻고 늘어져 사건의 확대를 막고 부천서형사들의 앞뒤 안맞는 집단적 위증의 자리로 이 재판을 빌려 주면서 재판장은 한뼘한뼘 민심의 소리를 대변하는 방청객에게는 고압적 권위를 주장하였다.

이 재판이 어떻게 열리는 재판인가?

이 재판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의 결과로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

“아직도 고문은 끝나지 않았다”

성고문사건의 문귀동이 드디어 1심에서 5년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진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다. 권인숙씨는 7월16일 자신의 ‘피해자 진술’을 통해 바로 이 답답함을 소리높여 외쳐댔다. 그 전문을 실는다.
: 편집자주



다면 86년 10월 고법에서의 변변스런 재정신청기각결정문도 나올 수 없었고 결론이 명확한 사건을 1년2개월이나 보류해두는 대법원의 소심함도 있을 수 없었다.

이 재판은 바로 국민들이 힘으로 쟁취한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귀동을 심판하는 재판정은 나를 성고문하도록 사주한 부천서의 관계간부들, 그리고 성고문 은폐조작의 총사령탑이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 참석자들, 이 회의의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태도를 급선회하여 나를 태도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관계검사들 모두가 온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인천지검 검사들은 10여일간의 방대하고 치밀한 수사로 거의 완벽한 심증을 갖고 있었고 부천서형사들의 진술에 관한 모든 사실, 그야말로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수사검사들을 불러 진실을 확인하게 드러내게 하고 경찰들의 위증의 진위여부를 구별해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이 바로 당시가 아닌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와 왜 그토록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감추어져야 했는지 관계기관대책회의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대하는 철저함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싹트고 그 속에서 법정의 신성함이 자리잡는 것일게다. **그런데도 기각결정이러니...**

그러나 현 재판부는 지난 7월 2일 특별검사가 신청한 당시 수사검사와 관

계기관대책회의 관계자 일부의 증인신청에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엇이 두려운가?

일건물에 있는 검찰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운가?

권력있는 사람들의 빙빙 증인출두라는 사실이 대단히 불손해보일 것 같아 두려운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외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그렇게도 치밀하고 과감했던 사법부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집단 등 악의 무리를 징제하는 이 자리에는 어찌 그리 어설픔고 서분가?

그리고 타당하지 못한가 말이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진실의 폭로와 용정의 중차대한 사명을 애써 외면하는 사법부를 거부한다.

그렇기에 나는 특별검사에게 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요구했다. 그것은 단순히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적 의무를 판결로써 지켜내지 못하는 모든것에 대한 기피이다.

나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고 현정권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들이 이 재판속에서 밝혀져야할 진실을 강하게 막는 총인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나를 고문하려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민주화의 길에는 아직도 많은 가시정물이 놓여져 있음을 쓰린 마음으로 느껴야 했다. ■

여성노동의 현장/차별임금 I '생산직'

여성노동
문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남녀차별임금의
실태를 두번에
걸쳐 심는다.
민주회내
직장여성 I, II
분과가 이
작업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면상
이번에는
생산직 여성의
실태만을 먼저
심게 됐다.
: 편집자주



“10년 일하고나니 남자월급의 절반”

“10년 세월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어
뻤든 내 처지도 변하긴했어요. 10년전에
같이 입사한 남자직공을 이제는 과장님
이라고 부르면서 깡뚝이 대우한다니까요.
저야 아직도 직책없는 일당직인데다 결
혼까지 했으니 요즘은 눈치까지 보는 형
편이에요. 똑같은 세월을 바쳤는데 나는
왜 그 남자사원 월급의 반밖에 못받는
요모양요몰이 됐는지...”

중소기업체 7정밀에서 조립일을 맡고
있는 김순자(32)아주머니. 고참사원격인
김씨는 한달후면 근속연수 10년을 채우
게 되는 요즈음 절로 이런 뉘뜨리를 하
게 된단다. 회사설립 1년후 생산직으로
함께 입사한 남자직공과 자신의 처지가
지금은 1백80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입사당시 똑같이 조립일을 했었지만
남자는 프레스기술을 배워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에는 과장자리까지

따냈다. 반면 김씨는 아직도 제자리걸음.
과장월급 45만원을 생각하면 일당 6천
3백50원짜리(수당을 합쳐 한달 총액 29
만원) 자기 신세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워낙 다른 여성노동자들도 같은 형편인
지라 아예 체념하고 만다고 한다.

똑같은 생산직으로 출발하더라도 남자
들은 기술을 익혀 생산직·사무직 관리
사원으로 승진·승급하는 길이 있는 반
면 여자들에게는 그저 단순·보조적인 일
만 맡겨져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한자리
에서 맴도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한 아
들마신세라면 승진이니 승급이니 하는
문제는 입밖에 내지도 말아야 할 '꿈'이
돼버리는 것이다.

20년간 좀체로 변하지 않은 임금차이

김씨아주머니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우리나라 생산직 여성노동자들
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길을 걷게되고

이런 상황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만큼 남녀
간의 임금격차란 '당연시' 되어 아예 구
조적으로 정착되다시피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징은
학력·직종·남녀·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가 크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차별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합리적 수단
으로서 굳어져왔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의
자동화·기계화가 이뤄졌고 생산직노동
은 '단순'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바뀌
었다. 따라서 일의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생산직노동자사이의 직종·기업·학
력별 임금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유독 20년전과 비교해 조금
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남녀간의
임금차이다. 공고를 졸업하고 전문직 기
술·기능을 지닌 기사를 제외한다면, 중
고졸 생산직 남녀노동자의 일은 그 강도
나 숙련도에 남녀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
모 하청업체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분명
히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차이는
20년전과 비교해 봐도 여전히 심하다.

“여자 하는 일은 단순하니 그렇지...”

그렇다면 왜 똑같이 일하고도 여자노
동자는 남자의 절반정도밖에 임금을 받
지 못하는 걸까?

이는 남녀의 업무가 엄격히 분리된 우
리나라 노동시장구조에서 비롯된다. 즉
남성사업장(기계·금속 등)과 여성사업
장(섬유·전자·고무)을 분리시켜놓고
일도 여성과 남성일로 나누어진 것. 이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 남녀가 동시에 비
숙련노동자로 취직했다 해도 남자는 곧
숙련기술자로 키워주지만 여자는 기술을
익힐 기회마저 주지않는다. 따라서 수년
후에는 남자는 숙련공으로 한단계 진전
하지만 여자는 미숙련 단순직으로 입사
때와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며 임금차
이는 근속연수가 길면 갈수록 더 벌어지
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남녀차별임금은 여러가
지 이유로 정당화되어왔다.

“남자는 여자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니다. 아무래도 교재복도 넓고...”

“여자는 가계를 보조하는 쪽이 많지만
남자는 자기 한몸 바라보는 식구들이 주
령주령 달린 가장들 아닙니까?”

“여자가 하는 일은 단순하고 보조적인
업무들인데요, 뭐?”

“여자들은 근속연수가 짧으니 대우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핑계같은 항변에 부딪치다보니
우리 여성노동자 자신들도 별 문제의식

을 갖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이번 사업장 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기술숙련도가 여자보다 높지않아도, 남자와 근무연수가 비슷한데도, 많은 여성노동자가 가계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인데도, 남녀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는 숙련도나 노동강도에서 동일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을 택했다. 전자·금속업체가 대부분이었고 완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조립·가공 등 단순·미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많았다.

이중 전기·화학·전자업체는 남녀노동자의 비율이 반반이며 여성중에도 기혼·미혼 비율 역시 반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계·금속 등 남성사업장은 여성이 전체의 10~20%뿐이며 거의가 30~50대 주부들이다.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남성과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1

남녀간 학력차이로 인한 노동의 차이는 없지만 같은 일을 할 경우, 즉 동일노동일 때도 남녀임금차별은 보편적이다.

중·고졸 정도의 학력을 지닌 미숙련 남녀노동자의 경우 같은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의 영역만 다를 뿐 노동의 질적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초임에서 일당 1백~5백원의 차이가 있었다. 몇개 사업

장에서는 초임이 같았으나 2~3년이 지나면 차등인상으로 인해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인기업

이 회사는 자동차완구·블러 등 장난감을 생산하는 완구제조업체. 노동자수는 3백명으로 남녀비율이 정확히 반반이다. 학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동자가 완구를 조립하는 일을 하는데 1987년의 임금은 다음과 같다.

수습기간→3개월후

중졸	남(균평)	: 3,600→4,100
	여	: 3,450→3,800
고졸	남(균평)	: 3,700→4,200
	여	: 3,500→3,900

입사당시 남자의 최고 임금은 일당 3천7백원, 여자의 최저 임금은 3천4백50원으로 2백50원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3개월후에는 3백원으로 더 벌어진다. 더구나 성수기에는 인근지역 주부들을 3개월간 임시직으로 고용, 일당 4천원을 주었다고 한다. 이나마 주부들이 정식직원으로 인정해줄 것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채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물산

인물산은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로 남자는 1백90명, 여자는 1백20여명이 일하고 있다. 주 업무는 고무배합, 로라(고무 뭉치는 것), 코팅 등인데 일의 내용상 고숙련 기술이 필요없어 남녀노동자의 일이 비슷하다.

초임은 남자가 1만6천원, 여자가 1만5천원으로 1만4천원의 차이가 있다. 12년째 근무하는 최고참일 경우 남자는 39만원, 여자는 21만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직책은 똑같이 평사원이다. 결국 초기의 1만4천원이 12년후 18만원이라는

엄청난 임금격차로 발전한 셈이다. 이 액수를 비율로 환산해보면 초임에서 여자가 남자의 91%였으나 12년후 남자의 54%에 불과했다.

이 사업장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차별임금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으면서 개선을 위한 길을 알고 싶어했다.

●O제화

구두를 전량수출하는 신발제조업체. 이 회사에 입사하면 남녀 모두 견습공으로(견습기간은 일정치 않다) 월12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그런데 견습기간중에 이미 남자는 기능공으로 양성시켜 신발조립을 하게 하고 여자는 재단, 시아제(마무리), 실패짜기, 오염제거 등 단순노동만을 계속시킨다.

따라서 같이 입사한 남녀동기는 2년후인 지금, 일의 분야가 달라지면서 기본급에서 7~8천원 차이가 난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인상기간에 남녀 불문하고 같은 비율로 임금을 인상해줄 것과 하후상방 원칙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나마 실패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도 기능공 대우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자 사장은 "여자는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장래성이 없으니까"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인정밀

이 회사는 건축케이스를 생산, 납품하는 하청업체다. 금형·프레스는 기능공 남자가, 조립은 단순직 남녀가 같이, 포장과 탭은 여자만 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전체의 40%로 모두 30~50대 주부들이다.

임금을 보면 단순직의 경우 남자초임

연 도	남	여
1967	100	53
1976	100	55
1983	100	54
1985	100	50.7 (ILO 발표)

(1976, 83년은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테이블」, 1967년은 한국은행 「임금기본조사보고」, 1968)

(남: 100)

	여		여
한 국	50.7	서 독	72.3
덴 마 크	85.6	스 리 랑 카	71.7
노 르 웨 이	83.5	영 국	68.2
홍 콩	79.2	체 코	67.9
프 랑 스	79.0	스 위 스	67.1
스 웨 덴	89.8	싱 가 폴	63.4
벨 기 에	74.3		

(자료: ILO 「Year Book」, 1985)



여성노동의 현장/차별임금 I '생산직'

이 4천5백원, 여자는 4천원으로 5백원의 일당차이가 있다. 이 사업장은 87년에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여자 초임이 일당 3천6백원이었고 수당은 남자의 절반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결성후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차별임금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2

여성노동자는 승진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고 있다.

승진·승급이 거론될 때마다 여성노동자는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었다. 10년이 넘게 일해왔어도 여성은 단순노동만 할 뿐이고 근속연수가 많아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다소 많을 뿐 승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20개 사업장중 5군데에서만 여성이 조장·반장으로 승진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도 일정한 승진체계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성실성이나 최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상징적'인 승진을 시킨 데 불과했다.

또한 승진은 노조의 있고없음과도 무관하다.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보다 비교적 합리적이지만 승진에 있어서만은 마찬가지로 여성을 제외시키고 있다. 정기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1명이상 승진한 사업장은 20개중 4개 사업장에 불과했다. 그 예를 들어보자.

● 동전기

이곳은 전선을 만드는 회사로 남녀노동자가 각각 80명씩 일하고 있다. 노조가 있어 초임도 높고(남녀 임금비율은 100:79) 승급에서도 남녀차별이 없으나 여성은 승진대상에서 빠져있다.

8년 6개월전에 함께 입사한 남녀노동자가 현재 남자는 반장으로 월50만원을, 여자는 직책없이 전선 끝손질작업을 하고 월 35~40만원(일당 6천4백50원+수당) 받는다. 노조에서는 근속연수로 승진체계에 남자와 동일하게 여자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전체를 통틀어 4명의 여자반장이 있을 뿐이다.

● 사립업

이 회사는 라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다. 근속연수가 10년된 남녀노동자를 비교해보면 남자는 생산직에서 시작해 월급받는 관리직사원으로 승진했고 여자는 제

품조립을 하며 일당 6천6백30원을 받는 평사원으로 일한다.

현재의 초임이 일당 5천6백원인 것을 보면 무직책으로 10년간 일하고도 받는 일당은 형편없이 낮은 것이다. 이는 곧 여성노동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시 승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 이정밀

9년전 설립과 동시에 입사한 최고참 남자는 생산직경력 4년만에 관리직이 됐고 현재는 부장으로 월5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근속연수가 같은 한 주부노동자는 직책은 물론 없고 일당직으로 월20만원을 손에 쥐 뿐이다. 최고참 사원인 두사람은 입사당시 똑같이 조립일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남자에게 금형·프레스기술을 익히도록 해 관리사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여자에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 대기업

이와 비슷한 예로 대기업을 들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10년 근속연수의 여성노동자는 반장으로 한달에 35만원정도(일당 6천2백원+수당)를 받지만 남자는 과장으로 승진, 월 40만원의 월급장이 되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남녀간 임금차이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점은 우선, 고용상의 남녀차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취직을 한 후 똑같이 단순한 업무를 맡는 남녀노동자의 초임에서 이미 차별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후 기술습득기회의 차별, 작업배치상의 차별로 인해



근무하면 할수록 임금과 승진에서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초임에서의 남녀차이는 평균 100:90 정도였는데 2년후(화학·인전지의 경우) 100:80으로, 10~12년후에는(인물산·인기업) 100:55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

즉 남녀동일노동(임금 100:90) → 차별적 작업배치 → 차별적 기술 습득(남자는 기능직, 여자는 단순직) → 남자는 승진(생산직·사무직 관리사원) 여자는 승진제외(특히 주부노동자) → 차별임금의 확대(100:55) 등으로 남녀차별임금은 임금자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여권에서 빚어지는 악순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취재에 응해주었던 20개 사업장중 15개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남녀차별임금'과 '승진기회박탈'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생리휴가마저 자유로이 쓸 수 없을 만큼 장시간 노동과 일상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현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속의 한 고리인 남녀차별 임금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 또한 이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런직장/코롬방

남녀 임금차 8천원 좁혔다

남녀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남녀임금차별을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초코렛 생산업체인 코롬방의 80여명 노동조합원들이 그 주인공.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 4일 이틀에 걸친 파업을 통해 여자 3만원, 남자 2만2천원의 임금인상에 성공, 남녀노동자의 임금차이를 좁혔다.

지난해 8월17일에 결성된 노조는 그동안 두차례 파업을 통해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을 한 바 있는데 세번째 파업인 이번 임금인상 투쟁에서는 특히 조합원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주부 노동

자들이 철야농성까지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게다가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노동자, 일용직 아줌마들까지 잘 설득해 힘을 보태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임금수당외에도 상여금 4백% 인상, 근속수당 신설, 학력간·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노조의 단결된 힘을 여지없이 과시한 성과를 얻게 됐다.

원래 이 회사 남녀노동자의 임금은 일당에서 거의 2천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투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조금씩 좁히기 위해 한발 내디뎠다는 데 그 의의가 돋보인다. ■

세계의 여성/인도

많은 가난한 여성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큰 공장엔 아예 발도 들어놓지 못한다. 대부분 조건이 나쁜 영세하청공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가내수공업에 하기 일쑤며 따라서 아무리 억울해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대꾸에 억장만 터질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공식부문 여성들을 위한 연합이 멀리 인도에서 생겨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의 눈길을 끈다. 2백50만 인구가 북적대는 인도의 한 공업도시 아메다바드에 탄생한 한 연합체가 인도의 노동운동·여성운동에 새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다.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연합(SEWA)’이라는 이 독특한 노동조합은 1972년 창립, 주로 노점상, 청소부, 담배제조업을 하는 가난한 여성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약 2만명.

SEWA는 아메다바드와 그 근교에 이 여성들을 위한 8군데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또 조합원들의 회비와 적립금을 토대로 연합자세은행을 설립, 여성노동자들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 1천2백달러까지 대부를 해주고 있다. 인도의 가난한 여성들은 정규은행을 통해서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한달에 1할 이상의 고리를 물면서까지 고리대금업자에게 매달려야만 했었다.

인도여성 90%가 비공식부문노동에

연합은 또 여성들이 비공식부문노동체제내에서 자기권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데에도 한몫 하고 있다.

‘비공식부문노동’이란 명확히 기업주



연합창립자인 엘라 바트세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 한 조직으로

이땅의 여성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또다른 여성들의 모습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함께 가는 여성」에서는 본호부터 「세계의 여성」란을 새로 만들었다. :편집자주

에게 고용되는 식의 ‘공식부문노동’에 상대되는 말인데, 노동법 등의 당연한 권리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영세민들 특히 여성들 대부분이 여기 속한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재료를 나눠주고 일한 양에 따라 도급제로 최소한의 돈을 지불하는 것.

이 연합의 창립자이자, 인도섬유노동조합에서 17년간 활동해온 엘라 바트세는 “서구식의 공장단위 노동조합으로는 거의 90%가 비공식부문에 고용되어있는 인도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연합의 힘으로 SEWA 회원들은 보다 좋은 임금과 작업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인도라는 이 지독한 남성지배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게 자기 권리를 획득해낸 것이다. SEWA 회원의 3분의1은 최고도이며, 다른 3분의1은 카스트계급 최하층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여성들은 인도의 경제적인 인습을 극복해 낸 것이다.

바트세는 여성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같은 하부경제조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노동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조직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날 말 맞 추 기



(가로열쇠)

- 6월말에서 7월말까지 비오는 날이 계속되죠.
- 꼬리가 어룡이라는 오래 묵은 여우.
- 이집트를 먹은 뒤의 만나갈.
- 물개로 켜 기름.
- 흔 내려 거드럭 거림.
- 첫째 가는 부자.
- 국외에

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검토해 보겠다’ ‘아는 바가 없다’며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던 사람들. ② 콩고 바운 내용이 실려 자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정부에서는 출판하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죠. ③ 나무를 잘라 둥근데 숫자를 세어 보면 나이를 알 수 있죠. ④ 마음속은 엉뚱하면서 겉으로는 천연스러움. ○○맞다. ⑤ 보릿 주전어 위해 발사되는 공격병기. 용도에 따라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지대지, 공대수중이 있죠. ⑥ 전기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이것은 여름의 필수품. ⑦ “○○○○도 없애고 마음길도 넓혀고~”란 노래가 있듯이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슬레트로 자뻑을 고치는게 큰 특징이었죠. ⑧ 천이나 물이 마른거라는 모양. ○○○○○.

(세로열쇠)

- 무우나 오이를 오섯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한 음식.
- 꼭 알맞게. “○○ 잘 왔구나”
- 왕의 장자처럼 몸이 구불구불한 것을 말하는데 일이나 앞길에 매우 험악함을 일컬음.
- 경망스럽게 아단을 떠는 것.
- ‘진달래꽃 ○○따 부러우리다’
- 꽃치니의 ‘○○부인’이란 오페라가 있죠.
- 어떤 일을 위해 돈을 내놓음.
-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
- 여배우의 첫째 조건으로 이

것을 꼽는다는데... 여성을 상품으로 선전하려는 수단이지. ⑩ 한문인 제품, 아주 보잘 것 없는 값어치. ‘○○어지도 안되는 인간’ ⑪ 파란색과 붉은색 천으로 등을 만들어 기쁜날에 걸어두죠. ⑫ 한결한. ⑬ 깊이 들지 못한 집. ⑭ 버림받은 아이. ⑮ 정권을 잡음. 우리나라의 ○○○은 민정당이지요.

(지난호 정답)

-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8월 25일까지 접수원 정답서를 주십시오.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자는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95-5 금호APT 2동 1001호 서명하시어, 인천 남구 용현5동 374-16 이미경씨입니다.

통	일	계	일	사	병
풍	지	막	산	진	원
매	기	사	회	상	
	기	법	질	투	
파	발	마	부	실	우
김	전	화	업	사	
치	한	선	구	지	
통	지	조	미	간	
지	속	성	대	동	소
					이

직장내 폭력추방운동/공개토론회



우리 일터에서 폭력을 추방하려면?

'한국소와'와 '한국TC'의 구사대폭력에 의해 7월 한달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는 구사대폭력 추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이처럼 극심스러워져만 가는 직장내 폭력의 근절방안을 논의는 공개토론회의 자리를 마련, 알아보았다. 7월 7일 선교교육원에서 열린 '직장내 폭력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기조발제 - 윤정숙 (민주회 회원)

갈수록 교묘해지는 폭력양태,
우리 모두 추방운동에 동참해야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듯이 작년의 노동자대투쟁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직장규모와 산업별의 구별없이 자발적, 폭발적인 양상으로 제기되어 1천2백여개의 노조가 결성되고 평균 20%의 임금제인상을 이룩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진출에 놀란 기업주와 공권력은 단시일내에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사대를 동원하고, 또한 국민과 노동자를 이간질시키는 제도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맞섰습니다.

민주회는 올해도 이러한 탄압이 더욱 심화, 교묘화될 것으로 생각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폭력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선전, 동참케 하여 사회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자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사례를 분석했더니 직접폭력에는 구사대폭력, 성폭력, 남치·감금이 있고 간접폭력에는 위장폐업,

폐업, 부당해고, 직장폐쇄, 산업재해, 열악한 근로조건이 해당되더군요. 물론 공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폭력에 개입하고 있구요.

이중 올해 들어서의 대표적인 폭력양태라면 구사대폭력, 위장폐업, 직장폐쇄를 들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구사대폭력은 정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대부분 노동자간의 싸움으로 위장됩니다. 최근에는 공장내의 동태를 살펴 노조결성에 핵심적인 사람들을 색출하기도 하고 농성지치 혼란까지도 합니다.

작년 광주 일성섬유에서 처음 선을 보였던 위장폐업 역시 정의에 들어간 노동



윤정숙

노동자들의 정의에 대한 기업주의 합법적 방어무기라 할 수 있는 직장폐쇄는 직장폐쇄 기간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을 봉쇄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올해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폭력의 한 방법입니다

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기업주는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해 버리고는 장기간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특히 봉쇄, 전자업제의 경우 하청으로 물량을 떠돌려 기업주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노조를 탄압합니다.

노동자들의 정의에 대한 기업주의 합법적 방어무기라 할 수 있는 '직장폐쇄'는 직장폐쇄 기간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을 봉쇄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올해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폭력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력에 의한 노동탄압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원은 사회전반의 비민주성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업주의 봉건적·비민주적·반조합주의적 노사관과 공권력의 불공정한 개입을 들 수 있겠지요.

결국 이러한 폭력은 구사대폭력의 경우 직장민주화를 요원케 하고, 직장폐쇄와 위장폐업은 합법의 껍질을 쓴 노동운동탄압이라는 점에서 법적, 운동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동계의견1 - 최한배 (국민운동본부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노동자의 연대, 언론의 공정보도, 올바른 법집행이 이뤄져야

직장내 폭력은 크게 봉건적 노무관리의 일환인 일상적폭력, 성폭행 등과 노동자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폭력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후자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구사대폭력과 공권력의 제도적폭력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항상 긴밀히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대한광학처럼 구사대가 난동을 부릴 때 경찰이 직접개입했다는지, 사후처리과정에서 구사대에게 실컷 맞다가 뺄 한번 때리면 즉각 구속되는 모습들이 그 예로서 성남의 광명전기, 고려피혁이 대



최한배

표적입니다.

이러한 직장내 폭력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를 우리는 노동자들의 극복사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적폭력은 노조가 결성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거의 근절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공권력과 결합된 폭력의 극복인데 크게는 노동자의 연대로써만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 성남, 서울, 마산·창원 등의 지역별 노조연대가 좋은 예겠지요.

또 광주지역처럼 민주화운동이 강력하게 고양된 지역에서는 직장내 폭력사태가 적고 언론이 사실만을 공정히 보도해 사회여론화가 되면 그 자체로서 구사대폭력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공권력이 얼마나 민중의 입장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최소한 법의 공정한 집행만 이루어져도 구사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견2-김성환 (인천한국금속 사무국장)

노동자와 노조의 단결로 기업주·공권력의 탄압극복

저희 회사 노조는 3월 9일부터 '노조의 정상적 활동보장'을 내걸고 싸움에 들어갔는데 회사측은 '노조가 있어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라며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등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싸움에는 열심이지만 그외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회사는 이걸 노련거죠.

그러나 저희는 이 싸움을 통해 노조와 노동자의 단결이 왜 중요한지를 체득했습니다. 21일간의 파업기간 내내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 노조원들로 붐볐고 말만의 연대가 아닌 서로 힘을 주는 연대를 체했습니다. 이런 싸움들에서 쌓여진 연대가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로 당연히 결실을 맺은 것이구요.

인천에서는 '악마의 5월'이라 할만큼

5월에 구사대폭력, 노조탄압이 심했어요. 이러한 기업주와 공권력의 탄압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의지력과 연대로써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지역, 산별로 확산, 강화돼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민주세력과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지요.

이외에 구체적으로 쟁의돌입 이전에 조합원교육 등을 통해 투쟁의지를 고양시키고, 개별사업장이나 지역노조협의회에서 정당방위조를 조직, 대응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여성계-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왜 직장내 폭력추방이 여성운동인가?

올해 임금인상투쟁기간중 여연은 사업장 지원을 통해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했습니다.

여성문제의 본질이 '여성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인 만큼 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억압은 여성문제의 핵심이며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쟁취, 단결권쟁취는 여성운동의 주요과제가 되며, 때문에 직장내 폭력추방이 여성운동의 실천과제로 되는 것이지요.

직장내 폭력추방을 위한 여연의 실천은 여연내의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실천은 대개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항의공문, 농성지원, 항의전화 등이고 2단계는 항의방문, 가두홍보, 3단계는 불매운동, 가두시위, 농성 등의 실천을 합니다. 이중 불매운동은 성공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끈질긴 노력이 장기간 뒤따라야 하고 따라서 남발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또 투쟁의 주체가 노동자로부터

이탈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의 내부투쟁력이 전제가 된 보조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직장내 폭력추방을 위한 여연의 지원은 제민주세력의 연대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폭력극복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법조계-박원순 (변호사)

끊임없이 고발, 항의하면서 법적 대응책 찾아야

구사대폭력의 방지책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형평화보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구사대에 대한 고발이 효과없다고 포기한다면 정말로 효과가 없게 되므로 끊임없이 고발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또 구사대폭력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신설도 유효할듯 하고, 최소한 근로감독관의 특별감독 하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직장폐쇄문제입니다.

직장폐쇄라는 무기가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근거는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인데, 이는 노동3권이 인정된 근거가 사용자의 광대한 사회적복혜에 맞서기 위함임을 볼 때 대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쟁의조정법 17조의 이 조항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이후에만 쓸 수 있다는 시기제한만 있고,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나 사전, 사후의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지돼야 하고, 최소한 무조건적 행사가 아닌 요건의 강화가 부여돼야 합니다.

세번째 위장폐업인데, 이는 위장방법의 교묘화로 대응방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쟁의기간중에는 폐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폐업후 새로운 사업장과 동질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및 해고근로자들의 당연복직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방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김성환

저희는 이 싸움을 통해 노조와 노동자의 단결이 왜 중요한지를 체득했습니다. 이런 싸움들에서 쌓여진 연대가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로 당연히 결실을 맺은 것이구요.



이미경

불매운동은 성공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방법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끈질긴 노력이 장기간 뒤따라야 하고 따라서 남발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박원순

구사대폭력의 방지책으로 수사기관의 수사형평화보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구사대에 대한 고발이 효과없다고 포기한다면 정말로 효과가 없게 되므로 끊임없이 고발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이 2달째를 맞고있다. 그간 이 운동은 남녀 모두의 관심속에 꾸준히 전개되어, 지난 7월 중순에는 한국노총에서도 개정시안을 내게까지 되었다. 지난호에 이어 본호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마련한 개정시안을 계속 실는다. 법조문이라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 법을 활용해야만 할 독자들을 위해 다음호에까지 나눠 실기로 했다. 편집자주

현행법	개정내용	개정안	개정이유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 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제6조(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신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 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제6조 변경없음	
제7조(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 제8조	제7조(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에 따라 다른 봉급기준, 수당, 승급기준 기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남녀 근로자간에 차별대우하는 임금체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명문으로 금지시켜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제8조(정년, 퇴직 및 해고)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 제9조	제8조 (현행법 제7조) 제9조 1.2(현행법 제8조 1.2)	
제9조(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은 근로여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 신설	3. 사업주가 근로여성이 혼인·임신·출산을 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경우 그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휴직·전직·감봉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당시의 규제조항만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행위는 근로계약 체결이후에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차별적 근로계약을 무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후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실제 법적 효과 및 법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0조(직업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0조	제10조 (현행법 제9조)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제11조(육아휴직) 1.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정	제10조 → 제11조	제11조 (현행법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2조 1. (현행법 제11조 제1항)	여성의 육아담당기능은 다음세대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근로무기간이 근로
	제12조 제3항 신설	제12조 2. (현행법 제11조 제2항)	

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조 제 3항 → 제 12조 제 4항	3.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 12조 4. (현행법 제 11조 제 3항)	연수에 포함되는 것과 준하여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조 (육아시설) 1.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조 → 제 13조	제 13조 (현행법 제 12조)	
제 13조 (복지시설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 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근로여성을 위한 제 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13조 → 제 14조	제 14조 (현행법 제 13조)	
제 4장 분쟁의 조정 제 14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 6조 내지 제 8조,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당해 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10일 이내에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조 → 제 15조 제 15조 개정 (부분추가)	제 4장 분쟁의 조정 제 1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 6조 내지 제 9조,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10일 이내에" 그 자율적인...	자율적 해결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법에서의 냉각기간이 10일인 것과 준하여 10일 이내에 자율적 해결을 하도록 하였다.

독자독후감

북한을 새로 보는 책

이인주 (서울 송파구 풍납동)



단을 뛰어넘어'는 북한사회에 대한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알게 해준다.

이 책은 1983년 7월 평양을 방문한 재미한인중 몇몇의 교수들이 쓴 일종의 기행문이다.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책이지만 금서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북한에 대한 자료의 개방조치와 더불어 발간하게 된 듯 싶다.

방문교수들은 거의가 북한에 친척이

양원식의 지음 / 「분단을 뛰어넘어」 중원문화사 / 값 4천원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여 터져나오는 민족통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한 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나뉜 채 오고갈 수 없고 오히려 적대시해 왔기에 어떤지 북한이라는 사회는 금기의 영역처럼 느껴져왔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북한사회를 억압되고 폐쇄적이고 가난한 곳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 사회에 대해 차단된 소수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접하게 된 '분

있는 사람들로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게 된 기쁨을 회한과 감격에 차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가는 곳마다에서의 느낌,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행동과 인상, 과거와 비교해 변화된 사실들, 제도, 풍습 등을 느낀대로 적고 있다. 좋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느낀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종교의식, 곳곳에 그야말로 곳곳에 있는 김일성주석의 존재, 탁아소에서 고등중학교까지의

무료 의무교육제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무료로 미치는 의료제도, 모든 세금의 폐지, 실제노동량에 따른 수입(예를 들면 의사나 교수보다 광부나 원양업 종사자의 임금이 많은 것), 적절한 모성보호, 실용품 위주의 간소한 생활용품들.

재미한인으로서 차지하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다 해도 북한방문후 교포사회에나 남한에서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북한방문이 그들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한 민족에 대한 사랑,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향땅을 밟게 했다. 서울에서 간다고 하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몇십년이 지나서야 타국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없는 안타까움으로 나타난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길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유일사상, 경제에서의 기본권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사고체제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불완전하나마 북한의 일면을 알기위해 한변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자료나 책들이 좀더 개방되어 올바른 시각으로 그 허점과 장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물음

제가 다니는 회사는 금융업무를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4년전 입사시 회사 총무부장과 저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9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저는 매년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일종의 임시직인 '상용사무원'은 약 90명입니다.

똑같은 근무조건속에서 열심히 일해도 다른 직원(남, 녀 약 3백명)들이 받는 상여금(연 6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있는 재계약에서 누락될까 두려워 상사의 눈치만 보는 직장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정식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회사측의 말만을 하늘처럼 믿고 있었는데 회사는 갑자기 외부에서 여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나가버린 몇몇 선배도 있었지만 묵묵히 2년~6년을 버텨온 우리 90명을 재치고 까마득한 후배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노동조합에 호소했으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용사무원이란 죄로 노동조합에도, 여직원회에도 가입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미영 드림

답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필요

'임시직'이란 죄 때문에

각자가 채용된 과정도 다르고 업무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혹 직장을 결혼전에 잠시 머무르는 임시직(장기)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정식직원이란 항구로 배를 띄워야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배가 좌물수록 물러오는 파도는 거세고 위협적이겠지요.

한 정식직원을 대기중인 입시직에서 승원하지 않고 외부에서 선발하려는 회사측의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우리의 소원은 정식직원'일 것입니다.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첫째는 상용사무원 전원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단결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채용된 과정도 다르고 업무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혹 직장을 결혼전에 잠시 머무르는 임시직(장기)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정식직원이란 항구로 배를 띄워야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배가 좌물수록 물러오는 파도는 거세고 위협적이겠지요.

회사측은 대졸남직원·고졸남직원·여직원·상용사무원 등의 차이를 두고 끊임없이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노동조합에도 여직원회에도 가입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재계약이라는 덫을 놓아 상용사무원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상사에 순종하는 의존적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가기준의 일부가 인상이 좋다·나쁘다 혹은 성품이 진실하다·술직하다 등의 매우 모호한 것들이란 점이 회사의 의도를 드러내줍니다.

재계약이 존재하는 한 직장의 안정성은 항상 위협당하고 무원칙한 인사와 비합리적 경영은 명랑한 직장의 분위기를

호릴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민주적 직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은 올바른 방향의 상용사무원모임, 여직원회,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만이...

둘째는 노동조합의 가입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하면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를 가지고 생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노동자·정신노동자·임시공·일공을 묻지 않고 모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현재의 노조에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회사측에 정식직원의 외부채용계획을 백지화하고 상용사무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크게 반발할 것이지만,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인사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이 기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야 할 목표와 방법은 대충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에 대한 애정이 바탕된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입니다. 보다 튼튼하고 큰 배만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설 차례입니다. 상용사무원 전체모임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유미영씨가 물담고 있던 직장에선 그 직후 이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항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다. 다음은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상용사무원 전원은 긴급간담회를 갖고 노조가입과 정식직원으로의 전직을 요구하며 이틀간의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상용사무원들이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었음을 인정하고 근로조건 차이를 이유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집단이기주의를 반성, 전원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회사측은 외부 고용계획을 철회하고 상용사무원의 단계적 전직을 약속하였으며 상용사무원 초임을 여직원 6급5호봉으로 조정, 금융수당인상, 체력단련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농성과 관련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이달의 소식

여연, 야쿠르트유업
단체교섭을 촉구
하는 가두홍보 벌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은 7월 19일 12시 동방플라자앞 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야쿠르트유업의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가두홍보를 벌였다.

상공회의소 8층에 있는 한국야쿠르트유업은 그간 단체교섭의 불성실, 부당해고, 보복인사, 청부폭력 등으로 노조를 탄압해 노조원 1백50명이 6월 28일부터 강북사업소에서 농성중이다.

이날 가두홍보에는 여연 산하단체의 회원과 야쿠르트유업노조원 30여명이 참가, 피켓을 들고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한편 여연은 7월 6일 한국야쿠르트유업에 항의공문을 보낸 바 있고, 7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야쿠르트청부폭력규탄 및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문귀동 징역5년 선고,
은폐·조작 기도는
거론조차 안돼

인천지법 형사합의 2부는 7월 23일 부천서 성고문사건 선고공판에서 문귀동에게 '가혹행위'와 '준강제추행' 혐의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권인숙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성고문재판은 문씨의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의 유죄인정뿐 아니라, 경찰과 정부당국의 조직적인 은폐·왜곡기도의 진상을 밝혀내는 점이 주요하게 부각됐었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참석인물로 알려진 서동권 전검찰총장,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은폐·조작기도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조영환특별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에게 이같이 가벼운 형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권씨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조작·왜곡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참석자들과 부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은폐·왜곡의 진상폭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고문재판
판결에 대한 우리의
견해'여연에서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26일 '부천경찰서 성고문재판 판결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연은 성고문사건의 진실규명이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핵심의 주변만 맴돌고 있음을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사법부에 바란다. 이번 재판은 법관들의 양심선언 후 달라졌을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음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 2심, 3심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사법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명백한 범죄 사실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던 법관들은 스스로 반성하는 행동을 보여 사법부의 쇄신에 참여하기 바란다.

2. 국회에 바란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발동하여 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관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범죄행위를 전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요망한다.

'보람찬 노조활동을
위해' 민우회 주최 제
2회 여성조합원교실

여성민우회는 7월 13일 부천YMCA에서 제2회 여성조합원교실을 개최했다. '보람찬 노동조합활동을 위해'라는 소재목아래 열린 이날 교육은 부천지역의 우진전자, 대림산업 등 8개 노조의 여

성조합원 25명이 참석, 강의와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 최영희 부회장이 맡은 강의에서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꾸리기 위해 여성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부천지역의 민주노조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대흥기계 노동조합의 사례발표는 단결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한편 교육장안에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노동운동사'라는 자그마한 사진전도 열려 선배들의 투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었다.

교회여성연합회 '반전
·반핵·평화' 한마당
8월6일 열 예정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제6회 평화마당을 8월 6일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연다.

'반전·반핵·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마당에서는 강연과 평화통일에 대한 입장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강연은 미 코네티컷대학의 김일평교수가 '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내용으로 맡는다.

'공동올림픽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공동올림픽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7월 27일 오후 5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민통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3천여명의 학생, 시민이 모여 조국통일에의 염원을 불태웠다. ■

‘김경숙열사 추모기념 및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8월 21일(일) 오후 2시~5시에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김경숙열사 9주기 추모기념 및 여성노동자전진대회’가 열립니다.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기독교여성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서울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중문화운동연합이 후원하는 이번 집회는 김경숙열사의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여성노동자운동이 주체성의 해방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대중집회입니다.

경인지역의 조직·비조직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YH 무역과 동일방직 등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승·극복함과 동시에 오늘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결속과 용기, 자신감과 새로운 결단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회일정은 1부, 2부로 나뉘어지는데 1부는 김경숙열사추모기념식이고 2부는 70년대 여성노동자투쟁공연, 80년대 이후의 투쟁사례발표(코스모스전자, 아주파이프), 결단극, 주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집회는 작년 7~8월부터 올해 임금상투쟁기간동안 강고한 단결과 투쟁으로 열심히 싸워온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앞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혼과 기혼의 여성노동자, 노동자부인과 그 가족들의 많은 참여속에 새로운 실천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이번 집회에 여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313-1060

‘직장내 폭력 백서’ 판매중

직장내 폭력 백서

‘직장내 폭력백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분량이 늘어나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격: 1천5백원
●문의: 313-1060



아리랑택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신문의 발행일은 매달 1일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직장 이야기> <이런 모임> <독자독후감>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등의 난은 독자의 참여로 채워지는 난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 취재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 ① 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

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 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아래의 온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신 후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해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흥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흥영주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산업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본회 번호: 7519497). 이용하실 분은 구독신청과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성문제: 연애, 결혼, 성문제, 그외 성차별적 문제

② 노동문제: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③ 교육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